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JP 모간 증남미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JP 모간 증남미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JP 모간 증남미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홈페이지 : www.jpmorganam.co.kr ☎ 758-5200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jpmorgana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5 년 11 월 24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 년 11 월 27 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증권의 종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증권의 수: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 또는 매출 기간(판매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판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모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대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실수령금액이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1. 모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분산투자가 어렵거나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펀드의 임의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의 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기재가 곤란하여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JP모간 중남미 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의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	73347
A-E	AX429
S	AX430
C	73348
C1	93119
C2	93120
C-E	73382
C-F	93121
C-I	AD386
C-W	9312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 분류됩니다.

나. 운용자산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로 분류됩니다.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마. 특수형태 표시: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클래스)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모자형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됩니다.

주) 상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과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1부의 내용 중 "4.가. 모집의 내용"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주) 모집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하고자 하는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및 종류별(클래스별) 가입자격은 제 2 부의 내용 중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별로 모집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모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모집의 규모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나. 모집방법 및 내용: 이 투자신탁의 모집(매출)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11.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라. 모집장소: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 모집합니다.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jpmorganam.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인수인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의 방법으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상장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JP모간 증남미 증권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신탁의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	73347
A-E	AX429
S	AX430
C	73348
C1	93119
C2	93120
C-E	73382
C-F	93121
C-I	AD386
C-W	9312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7.09.05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2008.09.04	투자신탁 결산
2008.09.16	영업일 정의등 변경
2009.05.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명칭 등 변경
2009.09.04	투자신탁 결산
2010.03.16	매입기준일의 변경
2010.05.03	판매보수 인하
2010.09.04	투자신탁 결산
2010.09.06	판매보수 인하
2011.09.04	투자신탁 결산
2012.09.04	투자신탁 결산
2012.10.17	C-I 클래스 신설
2013.09.04	투자신탁 결산
2014.09.04	투자신탁 결산
2014.10.31	A-E 및 S 클래스 신설
2015.09.04	투자신탁 결산
2015.11.27	환매수수료 삭제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5 부의 내용 중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상기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투자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5(정동) 제이피모간프라자 02-758- 5200 인터넷홈페이지: www.jpmorganam.co.kr
----------	--

나. 업무위탁관련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주식등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합니다), 조사분석업무 및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J.P.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주) 집합투자업자 및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의 내용 중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및 “2.운용관련 업무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주)

성명	출생 년도	직위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 현황(2015.09.30)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수탁고)	
기준환	1968	본부장	35개	약 6,288억원	- 미시간 대학교 - 동서증권, 동원증권, 동부화재, CJ자산운용 -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주)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원화자산의 운용을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 주)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Luis Carrillo	- 라틴아메리카 지역 및 아시아 지역 컨설턴트 - 1998년 J.P.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 입사 - 이머징 마켓팀의 멕시코 및 라틴아메리카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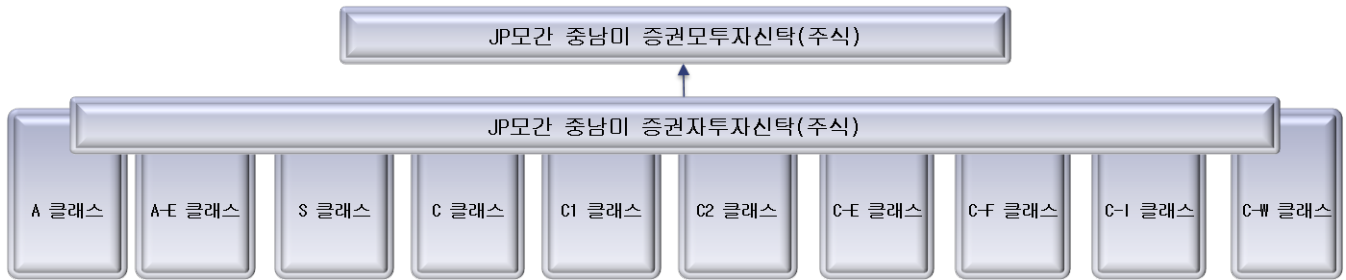
주)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 주도적·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및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 년간 변경내용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종류형집합투자기구 및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등 중남미 지역의 경제성장 관련 수혜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60%이상	JP 모간 중남미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 통화관련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파생상품시장 또는 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으로서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단,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40% 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또는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④ 신탁업자 고 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⑤ 금전의 차입	차입당시 신탁자산 총액의 10% 이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부터 ③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부터 ③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중남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10%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여 발행된 것("주식")
② 해외주식	60%이상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등 중남미 지역의 경제성장 관련 수혜 기업의 증권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증서로서 위 "주식"의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주식")
③ 파생결합증권	40%이하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증권")
④ 채권	40%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채권")
⑤ 해외채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채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채권")
⑥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자산유동화증권")
⑦ 어음 등	40%이하	양도성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어음 등")
⑧ 해외어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어음 등"의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어음")
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파생상품")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장내파생상품")
⑩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장외파생상품")
⑪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단,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 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의 총액

	및 해외어음 포함) 총액의 100% 이하	이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⑫ 수익증권	5% 이하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5%이하(자산총액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0%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0%이하(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
⑬ 증권 대여	증권총액의 4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
⑭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권총액의 4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
⑮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이하	상기 ① 부터 ⑤까지 및 ⑦부터 ⑧까지에 따른 증권의 차입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⑯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⑰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자산총액의 40%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또는 금융기관예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⑱ 금전의 차입	차입당시 모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부터 ⑫까지 및 ⑰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 부터 ⑮까지 및 ⑰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신탁업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① 단기대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 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② 파생상품 매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③ 파생상품 매매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 매매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 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③ 부터 ⑤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③ 부터 ⑤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중남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신탁업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① 단기대출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②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산총액의 100%이하: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이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에 한함),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됨)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함)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③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⑥ 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 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 파생상품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⑨ 집합투자업자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능.
⑩ 후순위 채권	모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② 및 ⑥ 부터 ⑧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모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 부터 ④까지 및 ⑥ 부터 ⑧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모투자신탁인 JP모간 중남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JP모간 중남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중남미 지역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등 중남미 지역의 경제성장 관련 수혜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계열회사인 **J.P.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에게 위탁됩니다.

(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일반적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자산 가치는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참조통화^{주1)}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최대 100%까지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원화)로 환헷지^{주2)} 하고자 합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참조통화와 외화자산의 통화 간의 환헷지를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언제든지 전적인 재량 하에 외화자산의 통화를 참조통화로 헷지 할 수 있습니다.

환율 위험에 대한 헷지는 참조통화로 나타낸 자산 가치 및/또는 외화자산의 통화 노출의 100%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는 일반적으로 장외 통화선도거래 및 외환스왑계약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초 통화가 유동성이 없거나 또는 다른 통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헷징 기법(잘 거래되지 않는 통화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다른 화폐를 헷징하는 것)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가 외화자산의 통화 및/또는 참조통화에 대하여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그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각각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투자자는 환헷지가 정확한 헷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헷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대부분의 기초자산의 통화는 참조통화 이외의 통화이므로 기초자산의 관련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지역의 경제성장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의 비교지수^{주3)}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적합한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의 변경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수익자에게의 통보 등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 MSCI EM Latin America 10/40 Capped Index TRN(USD)^{주3)}95% + 콜금리5%

주1) 참조통화란 모투자신탁이 채택한 통화를 말하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외화자산의 가치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 참조통화는 미달러화로 표시됩니다.

주2)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

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헷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헷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MSCI Inc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중남미 지역의 신흥국가의 주식시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TRN은 세후배당이익 등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은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투자대상국가와 한국간의 영업일, 시차 등으로 인하여 비교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본 문서의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되면, 자투자신탁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익은 이 투자신탁을 통하여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본 문서의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기타 투자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투자 의사 결정시 참고하여야 할 모든 위험이나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니며, 향후 투자환경의 변화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투자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헷지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참조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를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로 환헷지 하고자 하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전적인 재량 하에 외화자산을 참조통화로 환헷지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헷지가 정확한 헷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헷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i)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참조통화 간의 및/또는 (ii) 참조통화와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의 통화 간의 및/또는 (iii)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통화와 외화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9.가. (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위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헷지 전략이 수행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i)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에 대한 참조통화의 가치상승 및/또는 (ii) 참조통화에 대한 외화자산의 통화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통화로 투자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투자자산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실적은 (i)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참조통화 간의 및/또는 (ii) 참조통화와 외화자산의 통화 간의 및/또는 (iii)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통화와 외화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실적은 외환 감독 규정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위험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9. 가. (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환헷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한 위험에 또한 노출됩니다.
통화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율 변동 에 따른 위험	채무증권의 가격은 현행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장상황에 미루어 볼 때,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위험은 높았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신흥시장 포함)의 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신흥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을 투자하는 몇몇 신흥 시장의 회계, 감사, 재무 보고 관련 기준은 국제 기준에 비하여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특정한 주요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흥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신흥 시장 국가들은 근대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직접적인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제와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시장의 국유화·몰수·세금징수·외국환 규제·정치적 변화, 정부 규제·사회적 불안정·외교 상황과 제한적 유동성, 가격 변동성, 외국인 투자 및 자본에 대한 규제와 같은 작은 자본 시장 투자의 위험, 그리고 높은 물가 인상과 금리, 정치·사회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신흥 경제와 관련된 위험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시장과 관련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산 위험	모투자신탁은 고도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보유종목의 측면에서 다양화되어 있더라도, 수익자들은 모투자신탁이 그 투자대상국가의 상황악화로 인한 가격변동에 더 많이 노출되어, 광범위한 투자신탁, 예컨대, 글로벌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의 변동이 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동성위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는 경제, 정치, 시장 및 발행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산업, 금융시장 및 증권은 이러한 변화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모투자신탁의 가치는 변동성을 가질 수 있고, 단기간 동안에는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 등 제도적 위험	모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모투자신탁이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US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IRE")에 포함되어 제정된 FATCA에 의하면,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FATCA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14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특정한 미국 원천소득(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 주로 미국정부를 포함한 미국 법인·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및 이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미국 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매각수익 총액(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 주로 미국정부를 포함한 미국 법인·기관이 발행한 지분·채무증권)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미국 원천징수가 부과됩니다. 미국 재무규정(US Treasury Regulations) 하에서는 FATCA는 미국세청(IRS)과 외국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FFI)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용되고, 이에 따라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투자신탁의 특정 투자자(FATCA에 따라 제정된 미국 재무규정상의 특정 미국인 또는 특정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 법인 등을 의미합니다.)의 지분을 및 그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련된 미국 세금보고에 동의하게 됩니다.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Model 1 정부간 협약(이하 "한국 IGA")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따르면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대한민국 현지의 지도에 따라 시행되는 FATCA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FATCA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할 것이 요구됩니다. 한국 IGA는 미국 재무규정상 FATCA 요구사항을 수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세청에 전달되도록 Cayman Islands 정부에 유사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FATCA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2017년까지는 모투자신탁의 경우 미국 원천 수입에 대한 30%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투자신탁 또한 투자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지급에 관하여 FATCA 원천징수를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현재 FATCA를 준수하고자 하나, FATCA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FATCA의 준수가 보장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일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FATCA에 따른 원천징수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투자신탁에 지급되는 미국원천 지급금에 대하여 FATCA에 따른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즉,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FATCA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 국세청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FATCA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자신의 투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이 투자신탁, 판매회사 및 궁극적으로 미 국세청에게 제공·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 적용과 보고·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미국 연방세법과 관련된 내용은 이 투자신탁 및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되어 기재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의도되거나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추정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자신의 FATCA 지위와 FATCA 도입의 효과와 관련하여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금융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특히 모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이나 만기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되고 높은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모투자신탁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자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은 선물, 스왑 및 비상장 옵션 등과 같은 장외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들은 때때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자산의 현금화가 요구되는 경우 일부 자산은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투자자의 환매요구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순자산가치변 동위험	매입/환매청구일과 매입/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환매청구일로부터 매입/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펀드규모 위험	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모투자신탁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과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운영되는 국가의 휴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 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문서 제2부의 내용 중 "11.나.(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위험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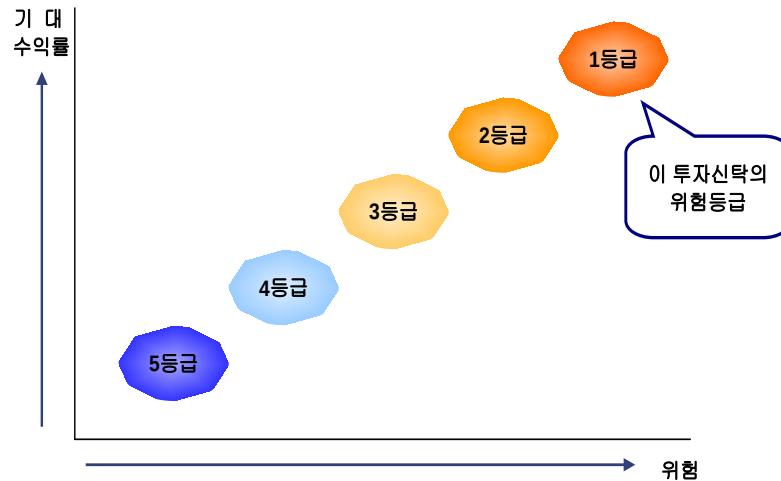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5단계^{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므로 5등급 중 위험수준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증권집합투자기구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 증권집합투자기구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	위험수준	내 용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주식, REITs, 신용평가등급이 투기등급(BB+등급 이하)인 채무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예의 최소 편입비가 6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헷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 또는 파생상품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주식, REITs, 신용평가등급이 투기등급(BB+등급 이하)인 채무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예의 최대 편입비가 5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 주식, REITs, 신용평가등급이 투기등급(BB+등급 이하)인 채무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예의 최대 편입비가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BBB- 등급 이상)인 채무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예의 최소 편입비가 60%이상인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 국공채, 지방채,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채무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예의 최소 편입비가 6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파생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직접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

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www.jpmorgan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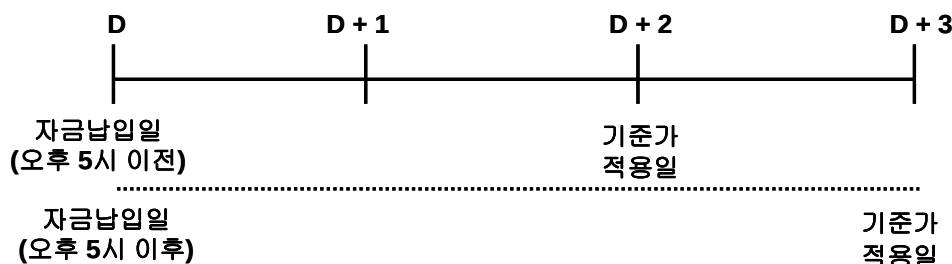
(2)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정책에 따라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류 (클래스)	가입자격
A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A-E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S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후취판매수수료는 징구하며,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C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1 클래스	제2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1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C2 클래스	제2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2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C-E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C-F 클래스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또는 최초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I 클래스	최초 납입금액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W 클래스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투자자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투자자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산정일의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17 시 30 분 (오후 5 시 30 분) 단 변동 가능함) (이하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최종시가(또는 “제 2 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일의 공정가액)를 사용해 해당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 및/또는 모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마켓타이밍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함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특정스왑 규제준수에 관한 지침(Interpretive Guidance and Policy Statement Regarding Compliance with Certain Swap Regulations, 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1.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2.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십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십은 제외합니다.
 3.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4.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신탁신탁을 의미합니다.
 5. 미국인(위 제1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에 따른 미국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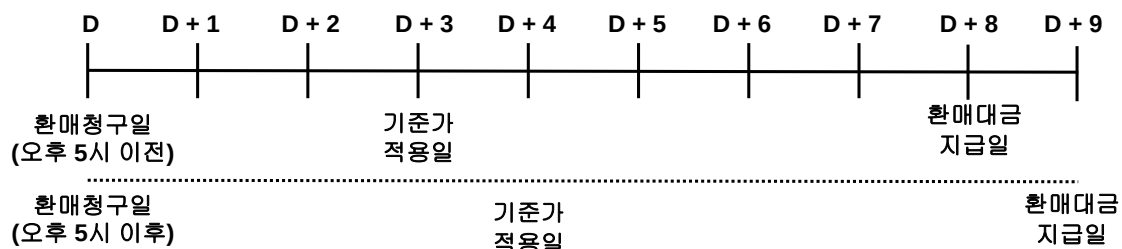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주)}: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주)}: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주)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회사를 포함)는 그 수익증권을 소각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7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과 신탁계약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주)}로 인하여 환매금액의 지급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날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기간 동안에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환매연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환매연기 등으로 인한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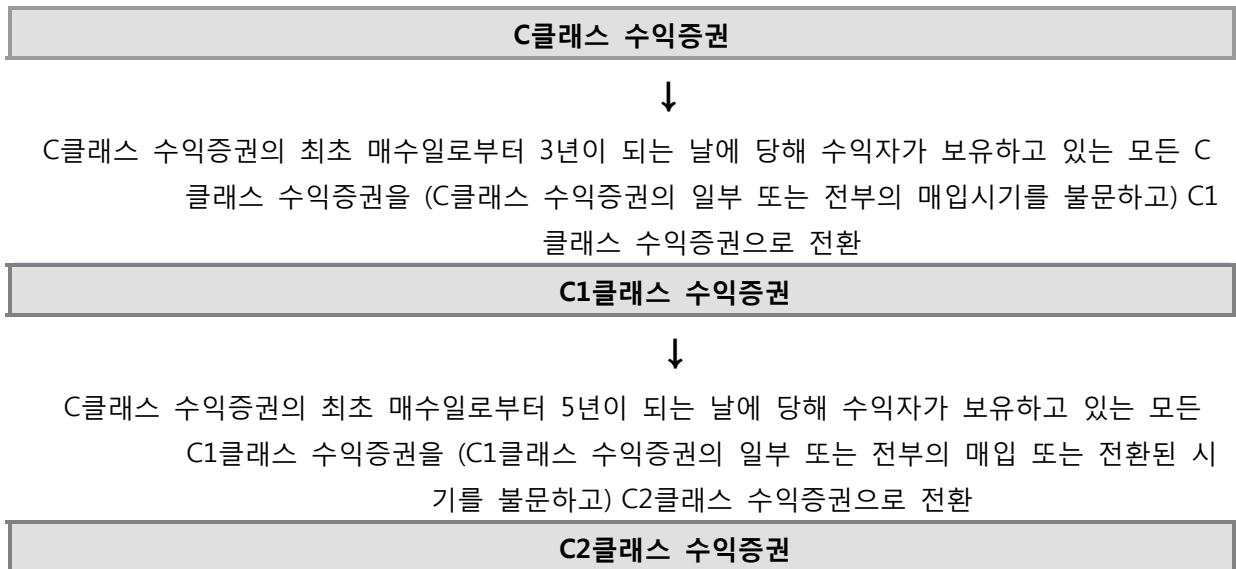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으로부터 분리하고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C 클래스 수익증권 및 C1 클래스 수익증권의 잔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전환을 청구합니다. 이 때,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수익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 처리 방법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만약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언급된 3 년, 5 년이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전환일로 봅니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날의 17 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수익증권의 전환요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1,000좌당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하“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및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jpmorganam.co.kr)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kofia.or.kr)에 공시합니다.

주)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 및/또는 모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동의하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가 좀 더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상장채무증권 장내파생상품 등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 공표된 가격
비상장 주식,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 등	취득가격, 거래가격 및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환율 등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부실화된 자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수익증권의 종류(클래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해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합니다.

가.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납입금액의 1.00% 이내 ^{주1)}	-	해당사항 없음
A-E	납입금액의 0.50% 이내 ^{주1)}	-	
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주2)}	
C	-	-	
C1	-	-	
C2	-	-	
C-E	-	-	
C-F	-	-	
C-I	-	-	
C-W	-	-	
지급시기	매수시	환매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내에서 후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에서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으며 이익분배에 따른 재투자 좌수의 환매분에 대하여는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주1) 주2)}

구분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 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기타비용 ^{주3)}	총보수·비용비율 주4)	증권거래비용 주5)
A	0.85	0.873	0.06	0.02	0.476	2.279	0.116
A-E	0.85	0.430	0.06	0.02	0.524	1.884	0.110
S	0.85	0.350	0.06	0.02	0.572	1.852	0.111
C	0.85	1.500	0.06	0.02	0.522	2.952	0.114
C1	0.85	1.300	0.06	0.02	0.479	2.709	0.115
C2	0.85	1.100	0.06	0.02	0.475	2.505	0.116
C-E	0.85	1.000	0.06	0.02	0.476	2.406	0.116
C-F	0.85	0.040	0.06	0.02	-	0.970	-
C-I	0.85	0.300	0.06	0.02	-	1.230	-
C-W	0.85	-	0.06	0.02	-	0.930	-
지급시기	매3개월 지급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주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보유자들만 부담합니다. 이 투자신탁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고 이로부터 인출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수익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주2)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1)과 같이 모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 재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주3)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추정한 것으로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비율(Synthetic Total Expense Ratio)로서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지출한 보수와 발생한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계산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증권거래비용은 모투자신탁이 1년 동안 지급한 증권거래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추정한 비율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예상수수료 및 보수는 투자기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주)

(단위: 천원)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A 클래스	302	738	1,219	2,649
A-E 클래스	185	471	777	1,648
S 클래스	128	398	689	1,517
C 클래스	271	854	1,497	3,407
C-E 클래스	251	790	1,385	3,152
C-F 클래스	97	303	526	1,166
C-I 클래스	123	383	663	1,461
C-W 클래스	93	291	504	1,120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및 보수를 기초로 하여 누계액으로 추정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보수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기의 표는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수수료, 보수 및 비용에 관한 확정적 자료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금전으로 분배하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마지막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10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계약에 따라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보유, 양도, 환매 및 기타 분배 등(이하 "관련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거주지 혹은 설립지 법률에 의한 세금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신탁 또는 본 문서의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과세결과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과세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과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사건에 따른 과세결과나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음 설명은 본 문서 작성일 당시의 세금관련 한국법과 세무관행에 근거한 것이며 그 내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이 한국 거주자인 개인임을 전제로 한 전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의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2)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은 한국 세제 목적상 도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투자신탁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신탁이 몇몇 외국 법역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처분으로 인한 이득, 기타 소득은 소득세, 원천세 또는 기타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세법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목적상, 법에 따른 투자신탁은 법인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환급됩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 소득

-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 등 투자재산의 매입과 보유에 관련하여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기타 세금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투자신탁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한국에서 부과된 증권거래세,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는 면제 내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이 분배하는 이익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환매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 이익은 거주자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거주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 포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최고 41.8%(소득세 38%, 지방소득세 3.8%,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됨).

한편, 내국법인이 받는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전체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2%(법인세 22%, 지방소득세 2.2%,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원천징수되며 (2013. 1. 현재 개인에 대해서는 15.4%, 법인에 대해서는 14.0%),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 포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 부분은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1.8%(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공제됨). 참고로,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2%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5) 미국인 수익자에 대한 과세

미국 세법(US Internal Revenue Code, the "IRC")상 본 집합투자기구는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에 속합니다. 미국 세법상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에 관한 조항은 미국 투자자(수동적 투자회사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보관회사나 판매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동적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투자자들은 IRC § 1296에 따라 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시가 평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거나 IRC §1294에 따라 본 집합투자기구를 Qualified Electing Fund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수동적 투자회사에 관한 정보를 미국인 수익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의거 회계검사를 받았으며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 (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제 8 기 20140905-20150904	제 7 기 20130905-20140904	제 6 기 20120905-20130904
I. 운용자산	6,352,287,922	14,315,963,554	20,116,176,214
증권	6,320,388,773	14,246,671,607	20,018,011,723
현금 및 예치금	31,899,149	69,291,947	98,164,491
II. 기타자산	40,400,428	418,450,600	204,800,260
자산총계	6,392,688,350	14,734,414,154	20,320,976,474
II. 기타부채	43,527,723	382,728,059	209,696,382
부채총계	43,527,723	382,728,059	209,696,382
I. 원본	12,778,442,421	16,284,905,496	27,484,035,435
II. 수익조정금	1,227,946,591	2,483,246,620	2,652,439,030
III. 이익잉여금	-7,657,228,385	-4,416,466,021	-10,025,194,373
자본총계	6,349,160,627	14,351,686,095	20,111,280,092
I. 운용수익	-5,257,838,264	3,269,890,234	187,991,625
이자수익	724,454	1,700,559	3,127,369
매매/평가차익(손)	-5,258,603,865	3,267,547,077	184,090,770
기타이익	41,147	642,598	773,486
II. 운용비용	176,429,744	313,600,912	526,068,502
관련회사보수	176,081,014	313,070,602	525,230,672
기타비용	348,730	530,310	837,830
III. 당기 순이익	-5,434,268,008	2,956,289,322	-338,076,877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제 8 기 20140905-20150904	제 7 기 20130905-20140904	제 6 기 20120905-20130904
I. 운용자산	6,352,287,922	14,315,963,554	20,116,176,214
(1) 현금 및 예치금	31,899,149	69,291,947	98,164,491
현금 및 현금성자산	31,899,149	69,291,947	98,164,491
(3) 유가증권	6,320,388,773	14,246,671,607	20,018,011,723
수익증권	6,320,388,773	14,246,671,607	20,018,011,723
II. 기타자산	40,400,428	418,450,600	204,800,260
매도유가증권미수금	40,396,327	418,436,632	204,777,412
미수이자	4,101	13,968	22,848
자산총계 (I + II)	6,392,688,350	14,734,414,154	20,320,976,474
II. 기타부채	43,527,723	382,728,059	209,696,382
해지미지급금	9,086,993	319,821,159	111,334,276
미지급이익분배금	9,086,993	319,821,159	111,334,276
수수료미지급금	34,410,860	62,867,430	98,296,146
기타미지급금	29,870	39,470	65,960
부채총계 (I + II)	43,527,723	382,728,059	209,696,382
I. 원본	12,778,442,421	16,284,905,496	27,484,035,435
원본액	12,778,442,421	16,284,905,496	27,484,035,435
II. 이익잉여금	-7,657,228,385	-4,416,466,021	-10,025,194,373
이월이익잉여금	-2,222,960,377	-7,372,755,343	-9,687,117,496
당기순이익	-5,434,268,008	2,956,289,322	-338,076,877
III. 설정조정금	-342,547,413	-155,642,908	135,258,702
IV. 해지조정금	1,570,494,004	2,638,889,528	2,517,180,328
자본총계 (I + II + III + IV)	6,349,160,627	14,351,686,095	20,111,280,092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20140905-20150904	20130905-20140904	20120905-20130904
I. 운용수익	-5,257,838,264	3,269,890,234	187,991,625
(1) 투자수익	765,601	2,343,157	3,900,855
이자수익	724,454	1,700,559	3,127,369
기타이익	41,147	642,598	773,486
(2) 매매차익 과 평가차익		3,301,163,113	1,075,494,038
수익증권매매차익		3,301,163,113	1,075,494,038
(3) 매매차손 과 평가차손	5,258,603,865	33,616,036	891,403,268
수익증권매매차손	5,258,603,865	33,616,036	891,403,268
II. 운용비용	176,429,744	313,600,912	526,068,502
운용수수료	80,451,491	142,762,470	237,576,850
판매수수료	88,057,645	156,871,683	265,293,667
수탁수수료	5,678,915	10,077,341	16,770,121
사무수탁수수료	1,892,963	3,359,108	5,590,034
기타비용	348,730	530,310	837,830
III. 당기순이익 (I - II)	-5,434,268,008	2,956,289,322	-338,076,877
* 총좌수	12,778,442,421	16,284,905,496	27,484,035,435
* 당기순이익(좌당 or 1000좌당)	-425.27	181.54	-12.3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원)

기간	종류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 잔고	
				설정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6기 (12.09.05~ 13.09.04)	A 클래스	32,025	50,864	118	94	10,412	8,364	21,731	42,594
	C 클래스	1,015	4,577	150	112	763	590	402	4,099
	C1 클래스	6,984	6,984	505	489	6,745	6,476	744	997
	C2 클래스	-	-	5,073	5,358	1,671	1,819	3,402	3,539
	C-E 클래스	2,072	2,118	331	259	806	630	1,597	1,747
7기 (13.09.05~ 14.09.04)	A 클래스	21,731	42,594	140	106	9,184	6,896	12,687	35,804
	C 클래스	402	4,099	89	62	458	332	33	3,829
	C1 클래스	744	997	290	260	406	384	628	873
	C2 클래스	3,402	3,539	154	155	1,268	1,274	2,288	2,420
	C-E 클래스	1,597	1,747	251	183	806	596	1,042	1,334
8기 (14.09.05~ 15.09.04)	A 클래스	12,687	35,804	289	181	3,389	2,212	9,587	33,733
	C 클래스	33	3,829	241	141	39	21	235	3,949
	C1 클래스	628	873	35	27	87	71	576	829

	C2 클래스	2,288	2,420	138	107	796	609	1,630	1,918
	C-E 클래스	1,042	1,334	202	126	448	292	796	1,168
	A-E 클래스	-	-	140	124	83	66	57	58
	S 클래스	-	-	5	5	-	-	5	5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이 투자신탁의 세전기준 운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용실적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기하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이 운용실적은 본 문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된 것으로 투자자의 실제 투자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간	최근 1 년 (14.09.05~15.09.04)	최근 2 년 (13.09.05~15.09.04)	최근 3 년 (12.09.05~15.09.04)	최근 5 년 (10.09.05~15.09.04)	설정일 이후 (설정일~15.09.04)
A 클래스	-42.10%	-17.02%	-13.17%	-8.40%	-7.82%
C 클래스	-42.47%	-17.54%	-13.71%	-8.95%	-8.45%
C-E 클래스	-42.18%	-17.13%	-13.32%	-8.62%	-8.10% ^{주 1)}
비교지수 ^{주 2)}	-41.51%	-15.34%	-13.60%	-8.82%	-2.95%

주1) C-E클래스의 수익률은 2007.09.06~2015.09.04까지의 기간 수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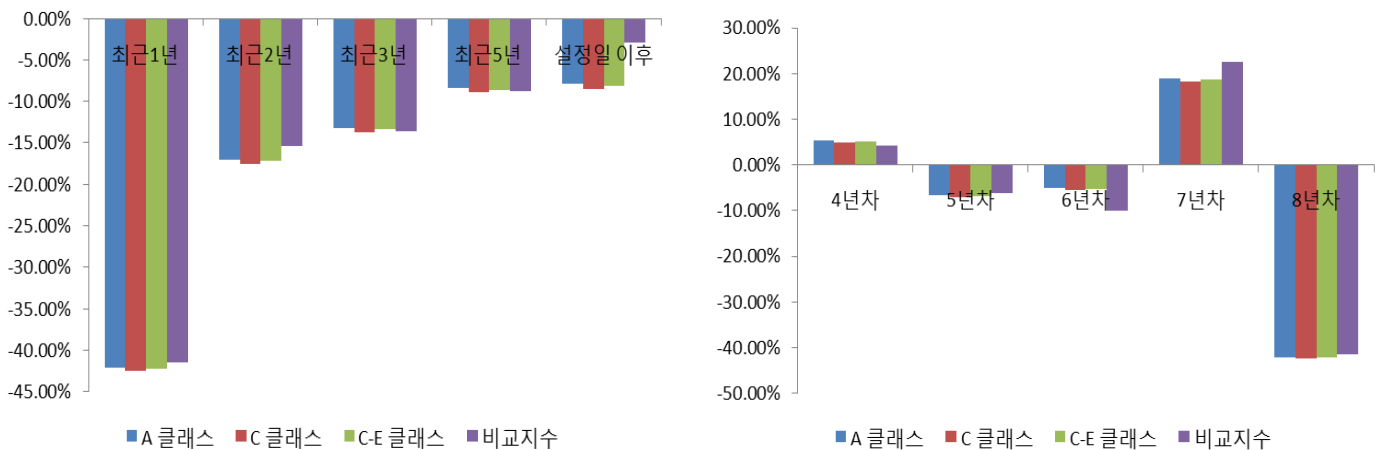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는 MSCI EM Latin America 10/40 Capped Index TRN (USD) 95% + 콜금리 5%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간	4 년차 (10.09.05~11.09.04)	5 년차 (11.09.05~12.09.04)	6 년차 (12.09.05~13.09.04)	7 년차 (13.09.05~14.09.04)	8 년차 (14.09.05~15.09.04)
A 클래스	5.44%	-6.57%	-4.93%	18.92%	-42.10%
C 클래스	4.88%	-7.11%	-5.51%	18.18%	-42.47%
C-E 클래스	5.06%	-6.88%	-5.16%	18.77%	-42.18%
비교지수 ^{주 1)}	4.26%	-6.25%	-10.03%	22.55%	-41.51%

주1) 비교지수는 MSCI EM Latin America 10/40 Capped Index TRN (USD) 95% + 콜금리 5%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신탁과 비교지수의 수익률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5년 9월 4일 기준)

(1) 이 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주1)}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한국 원	0	0	0	6,320	0	0	0	0	0	32	40	6,393
(1.00)	(0.00)	(0.00)	(0.00)	(98.87)	(0.00)	(0.00)	(0.00)	(0.00)	(0.00)	(0.50)	(0.63)	(100.00)
합 계	0	0	0	6,320	0	0	0	0	0	32	40	6,393
	(0.00)	(0.00)	(0.00)	(98.87)	(0.00)	(0.00)	(0.00)	(0.00)	(0.00)	(0.50)	(0.6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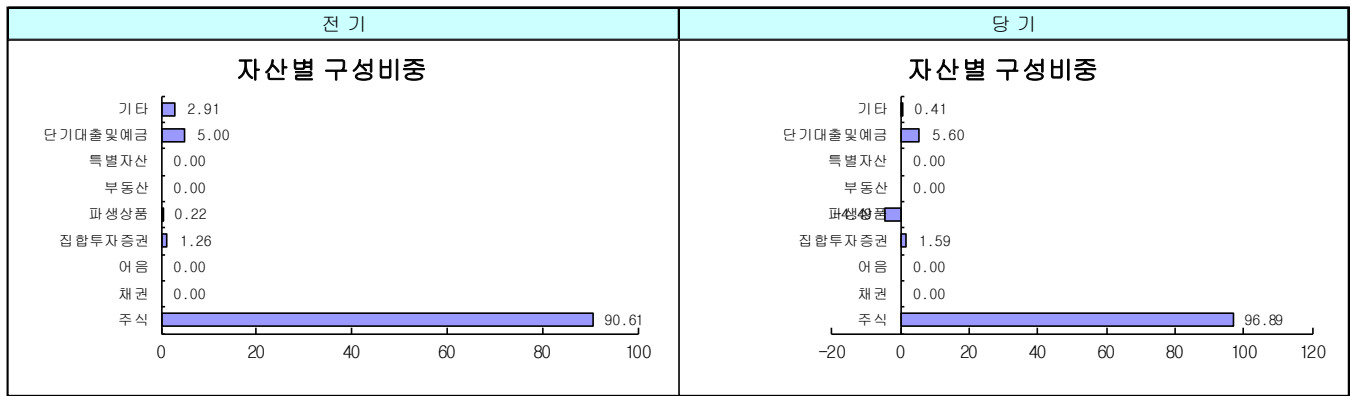
주 1) () 내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2)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주1)}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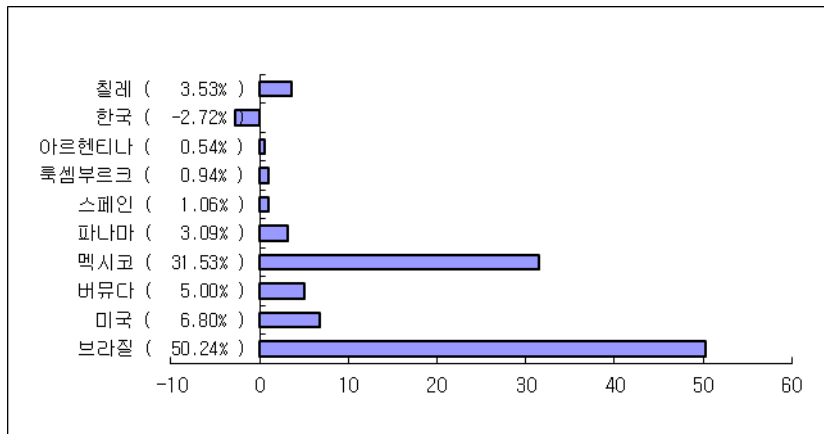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 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멕시코 페소	1,158	0	0	104	0	0	0	0	0	1	0	1,263
(70.81)	(17.71)	(0.00)	(0.00)	(1.59)	(0.00)	(0.00)	(0.00)	(0.00)	(0.00)	(0.02)	(0.00)	(19.32)
미국 달러	2,205	0	0	0	0	-293	0	0	0	252	0	2,164
(1193.40)	(33.72)	(0.00)	(0.00)	(0.00)	(0.00)	-(4.49)	(0.00)	(0.00)	(0.00)	(3.86)	(0.00)	(33.09)
콜롬비아 페소	69	0	0	0	0	0	0	0	0	0	0	69
(0.38)	(1.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6)
칠레 페소	231	0	0	0	0	0	0	0	0	0	0	231
(1.73)	(3.5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53)
브라질 레알	2,672	0	0	0	0	0	0	0	0	24	0	2,696
(319.21)	(40.8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6)	(0.00)	(41.24)
한국 원	0	0	0	0	0	0	0	0	0	88	27	116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5)	(0.41)	(1.77)
합 계	6,335	0	0	104	0	-293	0	0	0	366	27	6,538
	(96.89)	(0.00)	(0.00)	(1.59)	(0.00)	-(4.49)	(0.00)	(0.00)	(0.00)	(5.60)	(0.41)	(100.00)

주 1) () 내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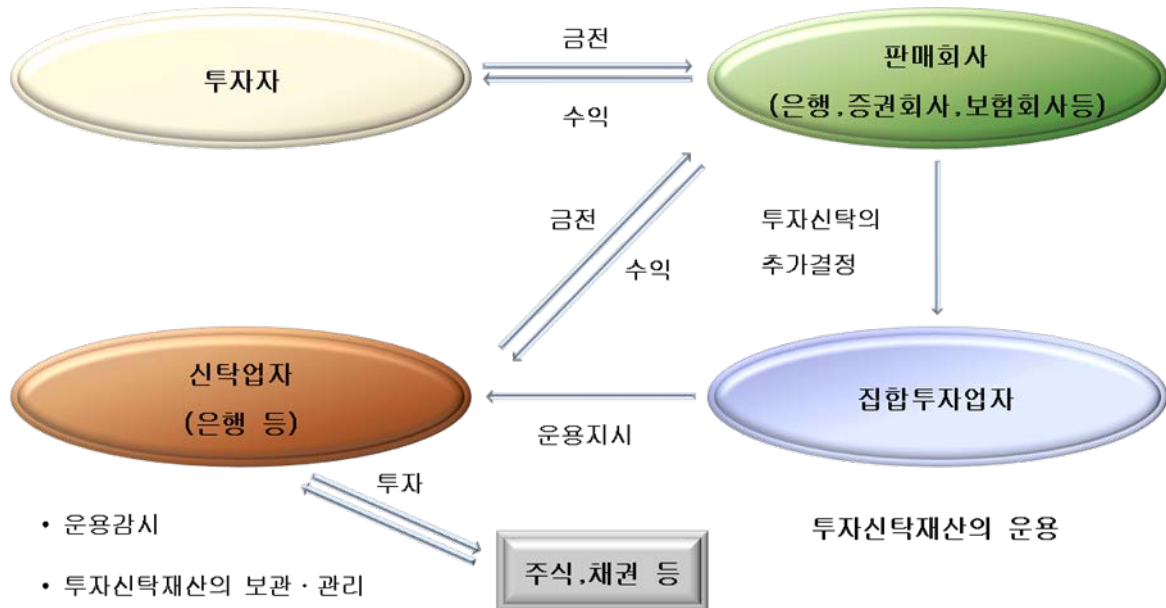
(3) 모투자신탁의 국가별 투자 현황

(단위: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을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금전 등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 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5(정동) 제이피모간프라자 02-758- 5200 인터넷홈페이지: www.jpmorganam.co.kr
회사 연혁	2007. 2. 회사설립 2007. 5. 자산운용업 허가 취득 2008. 5.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9. 2. 금융투자업 인가 (집합투자업 인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9.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펀드 등록 2010. 1. JP모간 펀드 엠브렐라 클래스 출시
자본금	240억원(2014년 12월말 현재)
주요주주현황	JPMorgan Asset Management (Asia) Inc. 100%

J.P.Morgan 자산운용은 JPMorgan Chase & Co.의 일원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투자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의 선두주자입니다. J.P.Morgan 자산운용은 1 조 5 천억 달러(2013 년 3 월말 현재 JPMorgan Chase & Co.의 고객 펀드)에 이르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전세계 41 개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J.P.Morgan 자산운용은 강력한 현지시장 지배력과 함께 글로벌 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산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JPMorgan Chase & Co.(뉴욕 증권거래소 명칭: JPM)는 2013년 3월말 현재 전세계적으로 2조 4천억 달러의 자산과 60여개 국가에 소재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적인 글로벌 금융서비스 회사입니다. JPMorgan Chase & Co.는 투자은행, 소비자 금융서비스, 소기업 상업은행, 금융거래, 자산운용, 그리고 사모투자 부문의 선두주자입니다. JPMorgan Chase & Co.는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의 대상회사중 하나로서 미국에서 수백만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세계 일류기업, 기구 및 정부 고객을 JPMorgan과 Chase 와 Washington Mutual브랜드의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www.jpmorgan.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 투자컨설팅 업무
- 기타 부수 업무

(2) 의무 및 책임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자의 이익 보호를 추구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관련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2014.12.31	2013.12.31	항 목	2014.12.31	2013.12.31
유동자산	33,800	31,012	영업수익	19,966	15,927
고정자산	2,202	2,577	영업비용	15,212	12,233
자산총계	36,002	33,589	영업이익	4,754	3,694
유동부채	3,354	4,359	영업외수익	-	-
고정부채	1,298	645	영업외비용	2	83

부채총계	4,652	5,004	법인세차감전순익	4,752	3,611
자본금	24,000	24,000	법인세비용	1,049	810
이익잉여금	7,031	4,266	당기순이익	3,703	2,801

라. 운용자산 규모 (2015. 09. 30. 현재)

(단위: 억원)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수탁고	6,654	1,389	1,692	60	-	-	-	9,79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합니다), 조사분석업무 및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J.P.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집합투자업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변경절차에 따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회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J.P.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
설립일	1984 년 2 월 7 일
회사주소	270 Park Avenue. New York, NY 10017 US 전화번호: (212) 483-2323 팩스: (212) 768-0557
J.P.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 는 1984년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 근거하여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10년 12월 31일 현재 6,78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HSBC펀드서비스(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2)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 1588-9999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회사연혁등	신탁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신탁업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추구합니다.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가 관련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 등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관련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가 관련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HSBC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봉래동) ☎ 02)3771-9800 [인터넷 홈페이지: www.hsbc.co.kr]
회사연혁등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의 계산
- 기준가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통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일반사무관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관련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집합투자업자는 아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채권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KIS 채권평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여의도동) T. 02-3215-1400	설립일 : 2000. 6. 20
한국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98-5) T. 02-399-3350	설립일 : 2000. 5. 29
나이스채권평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여의도동) T. 02-398-3900	설립일 : 2000. 6. 16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자료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 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만약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아래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부분 참조)은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만 구성되는 수익자총회에 위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 (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현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며,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다른 투

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투자신탁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신탁업자 등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등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하거나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제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되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하“기준일”)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매매회전율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 제5항에 정해진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에 정해진 사항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모투자신탁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 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또한 판매회사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이 정하는 주식(주권상장법인인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

용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최근 1년간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최근 1년간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의 거래는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인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매매업무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중개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 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중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회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수행한 평가에 기한 평가결과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 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라. 이해상충

JPMorgan Chase & Co. 또는 그 그룹회사(이하 "JPMorgan Chase & Co. 그룹")가 직간접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또는 의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JPMorgan Chase & Co. 그룹

은 수익증권의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보유할 수 있고 따라서 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증권 클래스의 의결권의 큰 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JPMorgan Chase & Co. 그룹은 다양한 목적(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증권 클래스의 성장, 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증권 클래스의 포트폴리오 운용 또는 세금 관련 보고 또는 특정 직원에 대한 장래 보수지급의무 이행의 목적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을 위해 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증권 클래스에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JPMorgan Chase & Co. 그룹은 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증권 클래스에 신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유지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증권 클래스에 행한 자신의 투자를 언제든지 감축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JPMorgan Chase & Co. 그룹은 자신의 재무계획의 일환으로, 자신이 투자한 수익증권 클래스에 대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소하기 위하여 그러한 위험을 헷지할 수 있습니다. JPMorgan Chase & Co. 그룹은 고객 계좌에 대한 신임자의 지위에서 고객에게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도록 권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하는 자신의 JPMorgan Chase & Co. 그룹 내 회사에 대한 채무상환의무를 불이행하고 해당 JPMorgan Chase & Co. 그룹 내 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JPMorgan Chase & Co. 그룹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의 보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JPMorgan Chase & Co. 그룹의 직원(포트폴리오 운용자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및 이사들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그 실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JPMorgan Chase & Co. 그룹의 직원들은 개인계좌거래 및 이해상충관리와 관련하여 JPMorgan Chase & Co.의 정책에 구속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1.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JP모간 중남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을 의미합니다.
2. "법"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추후에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3.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신탁업자"라 함은 (주)국민은행을 의미합니다.
5. "신탁계약"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및 추후에 변경되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의미합니다.
6. "영업일"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의미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7. "증권시장"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및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8.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함은 HSBC 펀드서비스(주)를 의미합니다.
9.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를 의미합니다.
10.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i)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ii)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iii) 집합투자업자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 (iv)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 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리고 (v)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를 의미합니다.
11. "투자설명서"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의미합니다.
12. "투자신탁"이라 함은 'JP모간 중남미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을 의미합니다.
13.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판매·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14. "외화자산"이라 함은 모투자신탁의 자산으로서 한국 외에서 발행되거나 거래되고 원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15.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함은 **J.P.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를 의미합니다.
16. "금융투자협회"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의미합니다.

본 문서에서 인용되는 법과 규정 및 신탁계약의 조항들은, 추후 개정, 교체, 제정되는 해당 법과 규정 및 신탁계약 조항을 포함합니다.